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95

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송기헌・이기헌・김 윤

문진석 • 염태영 • 백혜련

김영배 • 주철현 • 강훈식

김태년 • 위성곤 • 허 영

박 정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, 부산,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, 위탁병원으로 지정된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, 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7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7항까지의"를 "제8항까지의"로 한다.

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 기관 수, 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⑥ (생	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⑥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진		
	료를 위탁하는 경우 각 지역별		
	로 의료기관 수, 전문의 수, 진		
	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		
	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		
	<u>한다.</u>		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		
<u>⑧</u> 제1항부터 <u>제7항까지의</u> 규	<u> ⑨제8항까지의</u>		
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			
에 관한 법률」 제45조를 준용			
한다.			